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
운영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8년 7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18년 7월 9일

3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·기업·공공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와 기능, 구성(안 제2조~제3조)
 - 부패방지 정책 등에 대한 심의
 - 민관협의회는 의장 2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
- 의장의 직무, 위원의 임기, 회의(안 제4조~제7조)
 -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, 공동으로 회의소집 및 회의업무 총괄
 -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

- 민관실무협의회 설치와 운영 (안 제8조)
 - 실무협의회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
 - 청렴업무 담당부서장, 민관협의회 위원은 기관단체의 사무총장, 임원에 준하는 사람 등
-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지원(안 제11조)
 - 시민사회·기업·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회·기업·공공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‘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’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.
- 제정내용을 보면,
 - 제2조(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)에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렴사회협약 체결 및 협약이행,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,
- 제3조(민관협의회의 구성)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공공의 장과 민간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, 공공의장은 도지사가 되고 민간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,

- 제8조(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)에서는
 - 민관협의회의 심의 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,
 - 실무위원은 도 감사부서장과 민관협의회 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.
- 제9조(전문분과)는 필요할 경우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검토 등을 위해 전문분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제10조(조사·연구 및 협력사업 등 예산 지원)에서는 민관협의회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충청북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민과 공공기관·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부패방지 정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◎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(국민권익위원회)

종합청렴도 등급	기관(점수)
1	보은군(8.24), 옥천군(8.22)
2	영동군(8.02), 진천군(7.99), 단양군(7.84)
3	음성군(7.69), 충북교육청(7.66), 충주시(7.52), 괴산군(7.36)
4	충북개발공사(7.99), 충북도(7.43), 청주시(7.39)
5	제천시(6.99)

- 특히,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·공직유관단체를 아울러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긍정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됨. 다만,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 이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위 민관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렴도 향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붙임: 충청북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. 끝.